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4

제출년월일 : 2017.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조례 제정의 근거 규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고,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요건 명확화와 개정에 따른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근거규정 정비(안 제1조)

- 조례 설치 목적인 법률 조항을(근거규정) 정비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제2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27조로 정비

나. 지도위원 결격사유 정비(안 제3조)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지도위원 자격 결격사유 명료화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

다. 부칙

-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에 대한 결격사유 관리상 공백이 발생하므로 경과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및 「민법」　　* 관계법령 발췌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5. 12 ~ 2017. 6. 1)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법제심사 : 근거조항 및 일부문구 수정 반영

6)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2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27조”로,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을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절차등”을 “위촉절차 등”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될수”를 “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 --- 위촉절차 등 ----------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생 략)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될 수 ---- -.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연락처	(033) 330-2150